



# 울산광역시 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664호 2010. 10. 28. (목)

조 례	
--------	--

○ 조례 제562호 [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확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].....2

공 고	
--------	--

○ 공고 제2010-740호 [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안 입법예고].....5

## 【 안 내 문 】

-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  
 ⇒ 구 홈페이지(<http://www.bukgu.ulsan.kr>) → 행정정보 → 알림마당 → 북구 공보에서 열람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울산광역시 북구 편집 : 문화홍보과 (☎ 219-7207 행정 7207)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  
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 
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(인)

2010년 10월 28일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62호

##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

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 
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】

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(제2조 관련)

행정동명	동장정수	관할구역
농소 1동	1	○창평동, 호계동 일원 ○매곡동 1 ~ 391, 616 ~ 649, 655 ~ 791, 795-87 ~ 795-99 ○신천동 1 ~ 87, 241 ~ 313, 745-2 ~ 745-30 745-34·35, 745-39 ~ 745-41, 745-54 ~ 745-58 745-74·75, 745-77 ~ 745-79, 745-83 ~ 745-101 745-103 ~ 745-111, 745-118·121, 745-123 ~ 745-126, 745-128, 745-131 ~ 745-134 745-139·140·142·143, 745-145 ~ 745-147 745-150·152·155·156, 745-158 ~ 745-163, 745-165 ~ 745-170
농소 2동	1	○매곡동 392 ~ 615, 650 ~ 654, 795-1 ~ 795-77, 795-102 ~ 795-115, 855, 857 ○신천동 88 ~ 240, 314 ~ 316, 379 ~ 381, 382 ~ 745, 745-1, 745-31, 745-36 ~ 745-38, 745-62 ~ 745-48, 745-50 ~ 745-53, 745-59·60, 745-62 ~ 745-73, 745-112 ~ 745-115, 745-117·122·127·129·130, 745-136 ~ 745-138, 745-164, 782 ○중산동 일원
농소 3동	1	○시례동, 상안동, 천곡동, 달천동, 가대동 일원
강 동 동	1	○신명동, 대안동, 산하동, 정자동, 무룡동, 신현동, 구유동, 당사동, 어물동 일원
효 문 동	1	○진장동, 명촌동, 효문동, 연암동 일원
송 정 동	1	○송정동 및 화봉동 일원
양 정 동	1	○양정동 일원
염 포 동	1	○염포동 일원

## 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### 1. 개정이유

현대엠코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“신천엠코타운”이 2010년 10월 준공됨에 따라 사업부지 내 중산동을 신천동으로 편입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신천엠코타운 준공 부지 내 중산동을 신천동으로 편입

경계변경 前			⇒	경계변경 後		
법정동	필지	면적(m <sup>2</sup> )		법정동	필지	면적(m <sup>2</sup> )
계	179	62,506		계	179	62,506
신천동	86	42,316		<b>신천동</b>	86	42,316
<b>중산동</b>	93	20,190			93	20,190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0-740호

「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10월 28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## **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안 입법예고**

### **1. 개정이유**

수강료의 반환범위가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강료 반환 규정을 구체화하고 문화예술아카데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### **2. 주요내용**

가. 수강료의 반환 규정 구체화 (안 제14조)

나.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좌 운영 활성화 등 명문화(안 제15조)

### **3. 의견제출**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(참조 : 문화홍보과장,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홍보과 문화예술회관 담당(전화 052-219-7400, FAX 052-219-7409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## 4. 기타

개정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ulsan.kr](http://www.bukgu.ulsan.kr))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